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하 “신고자 등”이라 함)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1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제66조의2)하는 한편,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제10조의3)하여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이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김 현 응

법무부장관

●법률 제141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군·구”를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발급할 수 있다”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소지 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자치구)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세대를 같이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만 하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발급이 위임된 출입국 관련 증명서 중 출입국사실증명은 읍·면·동에서, 거소신고사실증명은 시·군·구(자치구)에서 발급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거소이전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 및 자치구가 아닌 구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를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 현 응

● **법률 제14174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1년”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어음의 만기 적용에 관한 특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기간 동안 발행하는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만기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일까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 전일까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날 전일까지
만기	6개월	5개월	4개월

제3조(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하고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하되, 이 법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는 6개월로, 이 법 공포 후 3년부터 4년까지는 5개월로, 이 법 공포 후 4년부터 5년까지는 4개월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